

1. 개정이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타법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던 사항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영향 여부 검토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되어 관련 조문과 서식을 삭제하고, 삭제하려는 조문에 있던 약칭을 다른 조문에서 다시 약칭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영향 검토 폐지(현행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삭제)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영향 여부 검토 절차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서식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약칭(안 제3조)

-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약칭하는 현행 제2조가 삭제될 때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약칭할 필요가 있음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안 제4조)

-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

하는 현행 제2조가 삭제될 때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약칭
할 필요가 있음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생 략

제 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을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영 제18조제3항”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u> <u>천연기념물등 보존) ① 「문화</u> <u>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u> <u>률」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u> <u>설공사”라 한다)의 인가·허가</u> <u>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u> <u>(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행정</u> <u>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u> <u>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검토 결</u> <u>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u> <u>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u> <u>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u> <u>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u> <u>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u> <u>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u> <u>②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u> <u>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u> <u>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u> <u>「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u> <u>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u> <u>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허</u> <u>가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u> <u>시하는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1</u> <u>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u>	<u><삭 제></u>

여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국가유산 청장은 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2. (생략)

②·③ (생략)

제4조(조사보고서)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국가유산 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조사보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